

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주요 지침

제정 2021.06.02

개정 2024.10.15

유경PSG자산운용주식회사(이하 "회사")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5조,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당사의 내부통제기준 제25조의17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사의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시합니다.

I.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된 정보

1.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합니다.
 - 1)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 - 2)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 - 3)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 - 4)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 - 5)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
2.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합니다.
 - 1) 부동산(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임차권·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 - 2)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. 단,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정보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5영업일이 지난 정보
 - 3)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

Ⅱ.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

1.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

- 회사의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

2.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

- 1)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
- 2)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- 3)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
Ⅲ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

회사는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및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이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1)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
- 2)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
- 3)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
- 4)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
- 5)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
- 6)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
- 7) 경영·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
- 8)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
- 9)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·해임 결정

- 10)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
- 11)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
- 12)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

IV.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

1. 상시적 정보교류차단

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,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·운영합니다.

- 1) 사무 공간의 분리
- 2)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
- 3)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·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
- 4)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·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·운영

2. 예외적 교류의 방법
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,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.

- 1)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
- 2)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사전 승인(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·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)을 받을 것
- 3)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
- 4)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
- 5)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

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

6)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유지·관리할 것

V. 계열사 등 제3자와의 정보교류 및 거래제한

1. 회사는 대주주 또는 계열회사 등 제3자(그 특수관계인을 포함)에 대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아래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보차단벽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합니다.
 - 1) 대주주 또는 계열회사 등 제3자(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, 이하 총칭하여 "계열회사등")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업 등에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
 - 2)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계열회사 등이 투자하는 행위
 - 3) 계열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
 - 4) 계열회사 등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적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
 - 5)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 행위
 - 6)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법 제84조 제1항 각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
 - 7) 계열회사 등과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
 - 8) 계열회사 등과 사무공간·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전산자료를 공유하는 행위
 - 9) 계열회사 등과 업무에 관한 회의·통신
2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- 1) 제1항제1호의 경우 회사는(i) 관련 법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, (ii)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한하여, (iii)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거쳐, (iv) 위험관리위원회 결의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. (단, 계열회사등이 관여하는 벤처투자 및 창업기획 사업에 대한 신용공여 방식(사업자금 대여, 보증, 담보제공 등)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참여 금지)
 - 2)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

- 3) 감사, 회계, 재무, 경영지원, 경영분석, 상품개발, 전산, 결제, 법무,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4) 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
- 5)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·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
- 6)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의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
- 7) 계열회사 등 제3자가 투자한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
- 8)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,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

VI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

1. 회사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조건에 대한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거나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해상충 및 법령위반 가능성을 해소하고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각 사안에 따라 고객에게 공개, 거래중단 및 후속계약 중단 또는 계약조건 수정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 - 1)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
 - 2)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
 - 3)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
 - 4)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. 다만 세부지침 등에서 집합투자기구 유형별로 매매회전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릅니다.
 - 5)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

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. 다만 세부지침 등에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한도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릅니다.

2.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와 이해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이를 할 수 있습니다.

- 1)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
- 2)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
- 3)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

3. 회사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제9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각 사안에 따라 고객에게 공개, 거래중단 및 후속계약 중단 또는 계약조건 수정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
- 1)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(자본시장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)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(자본시장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)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
- 2)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- 3)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
- 4)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·지시·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
- 5) 자신이 운용하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(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가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

VII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대응방안

1.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정보교류 차단 조직에 대하여 사전 승인 및 사후

보고 절차를 통해 상시 점검

2. 사무공간 분리,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, 회의·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등 정보교류 차단 장치 설치 및 운영
3.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부문 간 정보교류에 대하여 사전 승인 의무 부과
4.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